

-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775
----------	------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2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제5조(위탁 사무의 대상),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 필 요 성

- 무형문화재 전수 기반 강화 및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수교육 전용공간 마련
- 무형문화재 관련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위탁기관(단체)에 관리 운영 위탁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사무 및 범위 :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

라.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마.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위 치 : 북구 호암로 51(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 E동)
- 전체규모 : 지상 1~2층, 전용면적 1,024.39㎡
- 위탁대상

구분	면적(㎡)	용 도	해당종목
1층	420.99	공 방	소목장(국가), 단청장, 모필장, 창호장
		기획전시실	전 종목
		사무공간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2층	603.40	전시실	전 종목
		예능교육실	가곡, 영제시조, 판소리, 살풀이춤, 수건춤, 동부민요
		공 방	조각장(국가), 대고장

- 인원현황 : 3명(정규직 1, 비정규직 2) ※ 2023년 현재 기준

바.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 최초위탁 : 2017. 6. 1.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459,0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 공공운영비(임대료,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210,000천원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홍보 인쇄물 제작비 등) : 33,000천원
- 시설관리비(수리비, 수선비) : 7,000천원
- 인건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 10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등) : 104,000천원

※ 2024년 예산액은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3년 민간위탁 평가결과('22년 실적) : 다등급(종합평점 79.77점)

※ 등급부여기준

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 점	90점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3. 참고사항

가. 전경 및 위치도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 붙임 3

[붙임 1]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경 및 위치도

○ 전 경



○ 위치도(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 E동)



[붙임 2]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3]

문서번호	문화유산과-5705
등록일자	2023. 9. 27.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구분	비공개(5)

학예연구사	문화유산정책팀장	문화유산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부시장
신은이	윤정혜	심신희	조경선	김종한
협조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범위 :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를 거쳐 위탁자 선정
 - 위탁비용 : 연간 459백만원 정도('23년 기준)
- 대구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현황(17.6월 개관)**

 - 시설규모 : 2개층 / 연면적 1,024.39㎡(임차사용)
 - 역할 : 개인종목 전수교육 및 시민 체험활동, 전시 등 발표활동
 - 수탁단체 : (사)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2021.1~2023.12)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문화유산과)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12.31.)
됨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지역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현재 위탁기관 : (사)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21.1.1~23.12.31)

I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10조

II 필요성

-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강화를 위한 전수교육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 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E동) 임차 운영(2017. 6. 27. 개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 만료(23.12.31)에 따라 효율적 운영 위해 전문단체 재위탁 필요
- 전수교육관 시설 및 프로그램(공연, 기획전시, 체험) 운영

III

위탁 세부추진계획

1 대상시설 현황

- 시설명 :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위치 : 북구 호암로 51(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E동)
- 공간구성 : 전시실, 공방, 예능교육실, 공동강의실, 사무공간 등
- 규모 : 지상 1~2층(전용면적 1,024.39㎡)

구분	면적(㎡)	용도	해당종목
1층	420.99	공방	소목장(국가), 단청장, 모필장, 창호장
		기획전시실	전종목
		사무공간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2층	603.40	전시실	전종목
		예능교육실	가곡, 영제시조, 판소리, 살풀이춤, 수건춤, 동부민요
		공방	조각장(국가), 대고장

2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동의 : 2017.4.24.(제249회 임시회)

- 동의안 상정 : '23. 10월 임시회(23.10.11-10.20)

3 민간위탁 추진

1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위탁범위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정)
- 위탁조건
 -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 기타사항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관리·운영

2 수탁기관 선정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0월 중(예정)
 - 공고방법 : 대구시 공보 및 홈페이지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무형문화재 교육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보전 법인·단체,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
- ※ 1개 법인·단체 접수 시 재공고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관장의 시설운영 능력 및 사무인력 구성 등
 -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적정성, 운영 활성화, 예산편성 적정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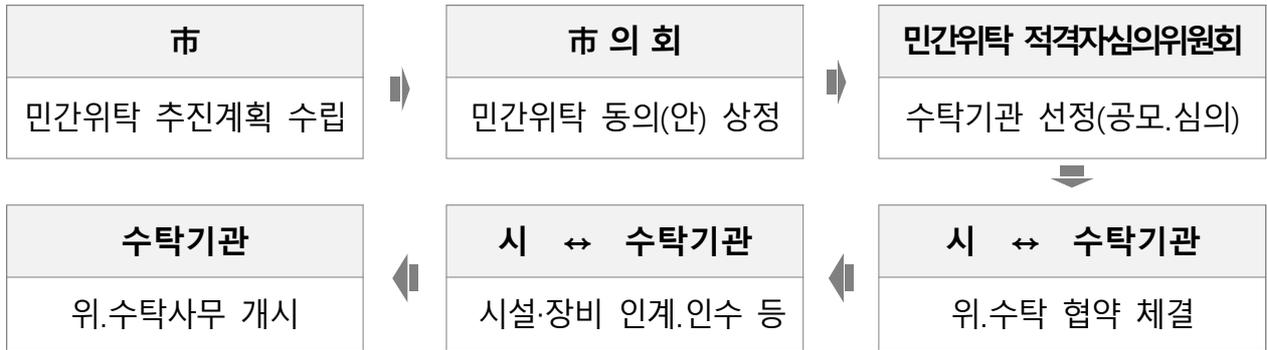
③ 위탁운영비 산정(안)

- 2024년 예산(안) : 459,000천원
 - 공공운영비(임대료,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210,000천원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인쇄물, 수선비 등) : 40,000천원
 - 인건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 105,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 104,000천원
- ※ 2024년 예산액은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위수탁계약 주요내용

- 위탁범위
 -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업무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임대, 계약관리,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전시·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삼성전자-(사)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체결 임대차계약 승계
 - 기타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 “위탁자”는 대구광역시장, “수탁자”는 법인·단체가 됨
 -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을 “위탁자”가 요청하는 시기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함
 - “수탁자”는 매분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서면보고 함
- 지도점검
 -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짐
- 손해배상
 -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짐

IV 위탁 추진절차



V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심의 : '23. 10월.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3. 10월.
- 경쟁에 의한 공개모집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3. 11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협약서 일상감사 실시 : '23. 11월.
- 일상감사 의뢰 및 위탁계약서(안) 심사 의뢰
- 계약체결 및 홈페이지 공개 : '23. 11월.
- 위탁계약 체결, 선정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 인수·인계 : '23. 12월.
-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목록, 생산문서 인수·인계
- 관리·운영 : '24. 1월.
-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관리 운영